제318회 임시회 2013.3.15(금)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3. 15.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완백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3년 2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2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3월 6일

(제3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완백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 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기업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지원 제한을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조항의 삭제(안 제4조)
-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여성기업 지원사항 강화 (안 제7조,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나기성)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중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도록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1의 조목 및 제6조 중 "제5조의1"을 "제5조의2"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9조의 지원 사항
-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지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	1. <u>"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u>
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	따른 기업을 말한다.
2조제1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중	(삭 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	
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의 범위를	
<u>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u>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	
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	
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지원 사항
 2.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원사항) ①
1. ~ 4.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5.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지도
5.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 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 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 (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②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시군별 여성기업 업체수 현황

(2011.12.31 기준)

시 군	여성기업수
합 계	42,300
청 주 시	17,511
충 주 시	6,416
제 천 시	4,473
청 원 군	3,187
보 은 군	953
옥 천 군	1,414
영 동 군	1,302
진 천 군	1,704
괴 산 군	1,002
음 성 군	2,223
단 양 군	1,192
증 평 군	923

※ 자료출처 : 2011년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2. 산업분류별 여성기업 업체수 현황

(2011.12.31 기준)

산업분류	여성기업 사업체수		
	42,300		
농업·임업 및 어업	12		
광업	8		
제조업	1,869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1		
하수・폐기물 처리 등	50		
건설업	682		
도매 및 소매업	11,315		
운수업	388		
숙박 및 음식점업	15,545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등	97		
금융 및 보험업	137		
부동산업 및 임대업	99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8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9		
교육 서비스업	2,75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96		

※ 자료출처 : 2011년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3. 2012년 여성기업 지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추진(위탁)기관
①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기업유치
• 센터 운영 지원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 13백만원	지원과
② 내일의 여성CEO 육성지원		기업유치
• 내일의 여성CEO 육성교육	- 내일의 여성CEO 육성 교육비 지원 : 4백만원	지원과
③ 여성기업 자금 지원		-1010 -1
• 자금지원 평가시 가점 부여	- 3 ~ 10점	기업유치 지원과
• 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 0.5%	7127
④ 여성기업 판로 지원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 물품 및 용역 : 각 구매총액의 5% - 공사 : 구매총액의 3%	기업유치지원과 (회계과 협조)
• 공공구매 입찰시 가점부여 (신인도 평가)	- 여성기업 : 0.5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 0.5~1점	회계과
• 우수제품 전시장 입주 우대	-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주 기업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 참가자 선정시 가점 부여 : 3~5점	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⑤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종합
• 홍보·마케팅 지원 ※ 장애인 기업 포함	-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28백만원 (14업체)	지원센터
⑥ 여성기업 기술 지원		3 33 43 3
• 국제규격인증(ISO) 지원우대	- ISO 획득지원 선정시 가점 부여 : 5점	미래산업과
⑦ 여성기업전용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 산업단지 내 시범지정 운영	- 전용산업단지 시범지정 추진	지원과
⑧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		기업유치
• 여성CEO 멘토링 워크숍	- 여성기업 멘토링 워크숍 개최 지원 : 4백만원	지원과
⑨ 여성기업인 표창		기업유치
■ 모범 여성경제인 표창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창립 기념 모범 여성경제인 시상 : 2명	지원과
합 계	- 예산지원 : 49백만원	

4. 2013년 여성기업 지원 주요사업 추진계획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추진(위탁)기관
 예성창업보육센 	터 운영 활성화		
• 센터 운영 7	시원	- 창업보육실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 13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② 내일의 여성C	EO 육성지원		
• 미래여성경제인	l 칭업마인드 함양	- 내일의 여성CEO 육성 교육비 지원 : 4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③ 여성기업 자금	금 지원		
• 자금지원 평	가시 가점 부여	- 2 ~ 10점	기업유치지원과
• 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적용	- 0.5%	
④ 여성기업 판료	르 지원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설정	- 물품 및 용역 : 각 구매총액의 3.5% - 공사 : 구매총액의 2%	기업유치지원과 (회계과 협조)
• 공공구매 입 (신인도 평가	찰시 가점부여)	- 여성기업 : 1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 1점	회계과
• 여성기업제품 '	안내서 제작 배포	-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홍보물 배포 : 12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 우수제품 전	시장 입주 우대	- 중소기업우수제품 전시판매장 입주 기업 선정시 우대	रुर्ग विरुक्तेम्भिम
■ 국내 전시・특	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 참가자 선정시 가점 부여 : 3~5점	रुर्र विरुषेत्रिक्ष
⑤ 여성기업전용	산업단지 운영		기업유치지원과
• 산업단지 내	전용구역 지정	- 전용산업단지 지정, 우선입주(3천평)	기급표시시된다
⑥ 여성기업 네트	트워크 구축		
• 충북여성Œ	O 포럼지원	- 교류확대를 통한 여성기업경쟁력 강화 : 10백만원	기업유치지원과
⑦ 여성기업인 표	E창		
• 모범 여성경	제인 표창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창립 기념 모범 여성기업인 시상 : 2명	기업유치지원과
합	계	- 예산지원 : 39백만원	